

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

제1조(명칭 및 목적) 이 규정은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29조 제4항 및 제31조 제3항에 따른 예원예술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1.13>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7~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기획조정처장, 교학지원처장, 행정지원처장, 학생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나머지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다음의 위원으로 한다.<개정 2015.2.1><개정 2017.09.25>

1. 교직원(학교법인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가능)
2. 학생
3. 관련전문가(본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)
4. 기타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구성단위별 위원 비율은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른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되며,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당연직 위원 1인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<개정 2017.09.25>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개정 2015.1.13>

1. 매 학년도 본교 등록금 책정 심의
2. 매 학년도 본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.
3.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수시회의로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④ 필요에 따라 위원 외에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.

제5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의2(회의록의 공개)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단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신설2012.12.21>

제6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등록금·예산심의시의 간사는 기획조정팀장. 결산심의시의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이 된다.<조개정 2015.1.13><개정 2017.09.25>

제7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고등교육법」 및 「사립학교법」,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.<조개정 2015.1.13.>

제8조(시행규칙) <삭제 2015.1.13>

부 칙(2010. 12. 2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2-12-0-4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

부 칙(2012. 12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1. 1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5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9. 25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